

THE BILL

cash management service

CMS의 차별화, THEBILL(더빌)CMS

회사소개

- 1 대한민국최초로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사업자를 허가해준 제 1호 등록업체입니다.
-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통합지불서비스** 회사로 월평균 800만명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 3 아파트관리비, 한전 전기요금자동이체 등 연간 수납 거래규모가 총 4조 5천억원 이상을 거래처리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연 2조5,000억 원

www.aptdesk.com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연 1조2,000억 원

www.apti.com



“온라인쇼핑몰 전자결제”
연 7,200억 원

www.allthegate.com



“은행/카드자동이체”
연 1,360억 원

www.thebill.co.kr



- 연혁 >>>
- 2013 KGB택배 인수합병
 - 201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 2011 휴대폰 자동이체서비스
 - 2010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법인명변경
 - 2009 현금영수증 사업자 인증(국세청)
 - 2008 더빌CMS 서비스개시
결제대금예치 사업자 등록(금융감독원)
- 등록번호 02-006-00014
 - 2007 지급결제대행 사업자 등록(금융감독원)
- 등록번호 02-004-00001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등록(금융감독원)
- 등록번호 02-007-00001
온/오프라인 통합 카드 자동이체서비스
국민연금 관리공단 납부서비스
 - 2006 지역난방공사 수납 자동이체서비스
 - 2004 한국전력 전기요금 중계, 자동이체서비스
 - 2002 아파트 관리비 수납카드 자동이체서비스
 - 2001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 2000 이지스호성

가입절차 및 이용승인기간

01 상담

02 신청서 작성

0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04 심사 및 가입승인

05 프로그램 교육 (해피콜)

06 프로그램 이용

>이용승인기간 : 계좌CMS : 신청서 접수 후 1일~2일
카드CMS : 신청서 접수 후 10일~15일(각 타드사 심사)
휴대폰CMS : 신청서 접수 후 1일~2일
페이뎀신용카드결제 : 신청서 접수 후 10일~15일(각 카드사 심사)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TheBILL이용신청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금지급통장 사본 1부, 이용요금 출금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

TheBILL이용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금지급통장 사본 1부, 이용요금 출금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TheBILL신청관련 문의

담당자 :

연락처 :

프로그램 문의

Tel : 대표:02.2082.7288 (안내2번)

Fax : 02.2082.7299, billdesk@aegisep.com URL : www.thebill.co.kr Company : www.aegisep.com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롯데IT캐슬 2동 714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결제사업본부 CMS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지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자인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라 한다)과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2. '가맹점'이란 회사로부터 서비스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자동이체'란 가맹점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후원금 등 각종 수입 자금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의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일요일
 3. 근로자의 날
5. '결제수수료'란 가맹점의 수납 또는 지급모작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회사가 가맹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증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요금'이란 결제수수료와 사용료를 말한다.
8. '고객'이란 가맹점의 거래회원을 말한다.
9. '결제기관'이란 승인을 위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결제 승인된 금액을 수납 대행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원천기관을 말한다.
10.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7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가맹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계약조건 확인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기재항목 및 부속서류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가맹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된다.
2.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가맹점의 약관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방식으로 약관사본을 교부한다.

[제4조 《약관의 변경》]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1개월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가맹점이 접근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가맹점이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가맹점에 불리한 경우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2. 가맹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 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단단의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도달되지 않으면 가맹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서비스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본 약관과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 《서비스이용거래의 범위》]

1. 회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이체서비스: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을 각종 수입자금을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2. 카드자동이체서비스: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고객 동의절차를 통해 약정한 일자에 서비스대금의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기 과금 형태의 결제서비스
 3. 휴대폰결제: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 요금에 후불로 통할 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4. 가상계좌서비스: 가맹점의 요청에 의하여 가맹점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가맹점 이 지정한 모작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제6조 《수납계좌의 지정》]

1. 가맹점은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
2. 가맹점이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는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된다.

[제7조 《가맹점의 의무》]

1.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한다. 또한, 서비스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가맹점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가맹점의 서비스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거래은행명, 예금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등 고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이용거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가맹점은 고객이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주어야 하며,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라도 어떠한 기밀을 지킬 수 없다.
6. 가맹점은 가맹점정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가맹점정보 변경 수단은 회사가 따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가맹점은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고객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8. 가맹점은 제10조(고객의 보호)에 명시된 고객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 총 결제기관 및 고객이 이의 제기 접수되면 가맹점은 2영업일내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연락즉시 기타 민원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일부 또는 전체 정산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이때 정산보류금은 담보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1. 가맹점은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서비스이용거래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가맹점에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서비스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 서비스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서비스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서비스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4. 회사가 서비스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고객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1. 가맹점은 본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비스이용거래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2.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입금이체 및 자동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서비스이용거래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등 서비스이용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한다.
4. 고객의 사망ㆍ한정지산선고ㆍ금지선고나 가맹점 또는 회사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고객의 보호》]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출금거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고객에게 자동이체신청서 및 동의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가맹점 연락부절로 자동이체신청서 및 동의를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가맹점이 고의,과실로 출금한 경우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가맹점에 민원접수를 통지하고, 자동이체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가맹점은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고객의 보호조치에는 가맹점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원칙이며, 회사는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가맹점은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금거래 고객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등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야 한다.

[제11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1. 서비스 일방이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파괴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가맹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가맹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은 제외한다)인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5. 가맹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가맹점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6. 회사는 회사에게 일력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이용요금 및 미납》]

1. 가맹점은 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요금을 납부한다.
2. 가맹점 또는 회사가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합의를 거쳐 결정하며 변경된 수수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지점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 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제4항의 수수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4. 사용료는 가맹점이 서비스이용거래를 통한 거래 발생이후 회사가 가맹점에 고객의 각종 수납대금을 첫 정산하거나 휴대폰번호로 승인요청을 한날의 해당월을 사용료로 하여 서비스해지가 완료된 월까지 매월 부과한다.사용료는 사용일 역월10일(영업일일 아닌 경우)영업일, 이하 같음에 가맹점의 수납계좌 또는 별도 신청된 계좌를 사용자 납부계좌로 자동 출금한다.
5. 가맹점이 납기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닐 경우, 회사는 납기일 이후부터 수도 출금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 미납에 대한 사실을 유선팩스/이메일 등 기타 수단을 통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1개월이상 지연되는 경우 결제 정산금액에서 미납이용요금을 차감할 수 있다.
6.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재출금 시에도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서비스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1호항에 따라 서비스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7. 회사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전 등록한 가맹점의 E-mai주소로 익월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

[제13조 《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거래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중지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1. 결제기관의 정기점검에 의한 경우
 2. 회사의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3.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미납한 경우
 4. 가맹점이 본 약관내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서비스이용거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해지요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가맹점이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맹점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월2회이상)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 3자로부터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결제기관, 감독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중지를 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2. 최근3개월 동안 이용요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 3. 가맹점의 착오인출이 연 3회이상 발생한 경우
- ④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담보금의 설정》]

- ① 가맹점은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 제휴를 가지고 있는 결제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가맹점이 신청한 월간대출금한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험보증증권을 발급하여 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험보증증권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은 월간대출한도 이상을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전산보류금 또는 제1항 담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본 서비스이용약관이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맹점에게 반환한다. 다만 이행보험보증증권을 반환치 아니한다.

[제15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① 가맹점은 고객의 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아야 하며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자동이체동의서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약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서면 이외의 자동이체동의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고객과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②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토록 하고 이를 보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토록 하고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서 원본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지 동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고객 또는 제3자가 고객을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 2. 고객이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 《이용기간》]

- ① 본 서비스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본 서비스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7조 《신용정보의 조회》]

가맹점은 본 서비스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8조 《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관리》]

- ① 가맹점과 회사는 업무 수행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가맹점은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정한 관리자의 주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제19조 《소송관할》]

본 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계좌자동이체 서비스

[제20조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DATA 전송》]

- ① 가맹점이 회사에게 계좌자동이체서비스이용 신청을 하였때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와 협의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결제기간 휴무일인 경우는 전 영업일로 한다.
 - 2.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된 계좌자동이체신청 정보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② 자동이체 변경, 해지
 - 1.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해지(만기 자동해지 등 포함) 등을 신청 받는 경우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2. 고객이 가맹점에게 계좌자동이체 신청이후 회사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고객이 해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요청 사실을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은 즉시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가맹점이 자동이체 해지처리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가맹점에게 통보한다.
 - 3. 회사는 제2호에 따라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가맹점이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되지 않도록 한다.
 - 4. 자동이체변경 및 해지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가맹점과 고객의 별도로 정한 계약에 준한다.

[제21조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 ① 자동이체서비스의 업무
 - 1. 가맹점이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만기)를 등록 하여야 한다.
 - 2. 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맹점의 정당한 동의하에 자동이체로 간주된다.
 - 3.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이체의뢰정보에 의거 가맹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결제기간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객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가맹점과 회사간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로 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결제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한다.
 - 4.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된 자동이체의뢰정보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 5. 자동이체 처리시 자동이체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 6. 전항과 관련하여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하기로 한다.
 - 7. 회사가 제20조에 의거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정보에 따라 이체처리업무를 한 경우, 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가맹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가맹점의 대

- 고객 분쟁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② 자동이체자금의 정산
 - 1. 회사가 회사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회사의 수납계좌에 입금한 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 2. 가맹점의 정산지정일이 제2조 4항에서 정한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 3. 제10조에 의거 고객 보호조치로 회사가 환불을 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③ 착오인출 처리
 - 1. 업무착오에 의해 가맹점에 자동이체신청을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착오인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가맹점에게 유선통지하며, 가맹점은 회사의 통지를 받는 즉시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여 착오인출이 발생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인출액 전액을 당일 중 반환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나 고객이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가맹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한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 2. 가맹점이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연 3회이상 발생했을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출금을 정지 할 수 있다.
 - 3. 회사가 본 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5조에 의거 가맹점이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맹점은 회사에게 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 1. 가맹점이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 또는 법적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3장 카드자동이체 서비스

[제22조 《서비스 처리》]

- ① 가맹점이 카드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자동이체회원에 대해 회원 가입 계약과는 별도로 카드 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② 카드자동이체회원은 자필 서명한 카드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및 본인인증 서명을 "올"에게 제출함으로써 카드자동이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가맹점은 회사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카드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시 가맹점에 책임이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카드자동이체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이 카드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2. 회사가 가맹점에게 카드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3. 카드자동이체회원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카드자동이체회원에 고객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4장 가상계좌 서비스

[제23조 《업무처리시간》]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 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가맹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입금업무처리》]

- ①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가맹점이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중 가맹점에게 전송한다.
- ③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가맹점의 인식 및 처리는 가맹점의 전산 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 ④ 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가맹점의 해당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시 가맹점은 지체없이 부족금액을 당일 중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장 휴대폰자동이체 서비스

[제25조 《정보취득》]

- ①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결제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서면에 의한 동의 신청서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회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와 별도 협의한 방법으로 동의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단,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동의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가맹점은 결제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6조 《정산》]

- ① 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가맹점이 결제승인한 당월(이하'M월')의 결제 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해 정산 지급된다.
- ② 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받는 해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가맹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가맹점의 수납액을 정산 받으면 가맹점과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과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 ④ 회사와 결제기관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환불을 행하는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반는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제24조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2. 가맹점과의 연락두절로 동의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고객이 동의신청서를 철회하였음에도 가맹점이 업무착오로 징구한 경우
- ⑥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제27조 《결제승인》]

- ① 결제승인요청은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면,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 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 ② 결제승인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 1. 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당월의 결제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요청된 경우
 - 2. 환불은 결제기관의 청구내역 생성이 완료된 이후(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의 익월 1일부터)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 ③ 결제승인 및 결제승인취소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신청업체정보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D [_____]	[PTC : CW001]
상 호	사 업 자 번 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 표 자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담 당 자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일 반 070-4800-5588~9 H.P	
세금계산서 수신이메일	홈 페이지	WWW.	
주 소 □□□-□□□□			

납부수단 이용신청

이 용 서 비 스	<input type="checkbox"/> 계좌CMS	<input type="checkbox"/> 카드CMS	<input type="checkbox"/> 휴대폰CMS	<input type="checkbox"/> 페이엣카드결제	<input type="checkbox"/> 가상계좌
기 본 정 보	이용목적	고객동장 기재내역			
대 금 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	<input type="checkbox"/> 이용요금출금계좌 동일한 경우 체크 * 이용요금출금계좌 미기재시 대금지급계좌에서 출금됨.	
이용요금출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페이엣리더기신청	기본형(MRS) 수량 ()개	* 단가 9,000원 (VAT별도)		* 페이엣은 스마트폰에 리더기를 연결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한 이동식 납부수단임.	

상세이용조건

(VAT별도)

출금한도	계좌CMS	건당한도	원	월간한도	원	담보설정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카드CMS		원		원		계좌CMS ()원	카드CMS ()원	
상세요금 (VAT별도)	가 입 비		원			월사용료			원
	계좌CMS	의퇴건당	원	출금건당	원	정산주시	출금일로부터		일
	카드CMS	승인금액	%				승인일로부터		일
	휴대폰CMS	승인금액	%				승인월로부터		개월
	페이엣카드결제	승인금액	%				승인일로부터		일
	가상계좌	입금건당	원				입금일로부터		일
특약사항									

페이엣모바일결제서비스이용특약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페이엣 모바일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합 전자 지불서비스 이용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카드리의 이용)
1. "갑"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을"이 지정한 카드리를 이용 한다.
2. "을"은 카드리의 임의 분해, 조작 등으로 발생한 결제 오류 및 모바일기기의 오작동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1. "갑"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을"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 배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앱" 전체 또는 구성요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귀책사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3 조 (자체가맹점 거래 중개)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 명의의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카드매입, 정산은 "갑"과 카드사의 계약 관계를 따른다.

제 4 조 (담보의 제공)
"갑"은 페이엣의 대표가맹점 거래한도 설정을 위해 담보액 _____ 백만원을 (보증보험, 현금)으로 제출한다.

제 5 조 (특약의 효력)
본 특약은 "갑"과 "을"간의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계약 기간 내에 유효하다.

CMS출금이체약관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 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출금이체신청(신규 및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 (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 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상기 신청내용과 이용계약서의 동의 전제로,
THEBILL(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제공)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법인영) : _____(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사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자: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사업장주소,우편물주소,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핸드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정산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용료출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예금주 사업자번호) 나. 결제 이용자: 이용자 성명, 이용자 주민번호, 주소(이용자 및 배송지), 휴대폰번호, 이메일,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용카드번호,거래승인번호, 거래일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통신판,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상품권번호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가. IP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공인인증기록, 실명인증기록	
수집 및 이용 목적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수납 3. 결제이용내역의 고지 5. 민원 처리 및 상담 요청 응답	2. 서비스 또는 제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벤트정보 안내 4. 부정 이용 및 비인가 사용 방지 6.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1. 서비스 이용계약 : 서비스 종료시 까지 3.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귀사가 위와 같이 수집, 이용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대표자명(법인명) _____ (인)

개인정보 제공 범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휴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휴사에게 제공 및 활용 됩니다.
 가. 개인정보 제공제휴사: (주)엔에치엔비즈니스플랫폼, (주)이노허브, 흥진데이터시스템, 기웅정보통신, 다날, 아이하트, LGU+, (주)에이포원
 나. 이용목적: 결제서비스의 재판매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공동마케팅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사업자 등록증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번호, 담당자 핸드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2.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3.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에 귀하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법원이 재판과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라. 당사와 관련하여 합병, 인수 또는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해당 합병 후 회사, 인수인 및 영업 양수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귀사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위와 같이 제 3자에게 제공함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대표자명(법인명) _____ (인)

개인정보 취급위탁

위탁업무	보증보험가입,갱신 처리(보험가입 시에 한함)
수탁자	서울보증보험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귀사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위와 같이 취급위탁함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대표자명(법인명) _____ (인)

자동이체동의서 의무징구 확인서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	자동이체동의서 요건
1. 자동이체동의서는 동의서 요건에 맞게 징구하여야 합니다. (유선 또는 구두동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출금하고자 하는 서비스(혹은 물품)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자동이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미수금이 있다고 임의로 출금 할 수 없습니다. 4. CMS서비스는 단순한 자금출금기가 아닌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서비스이며, 동의없는 출금 시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청구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날인이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2. 예금주의 계좌번호,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출금일(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혹은 물품)를 제공하는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자동이체되는 서비스(혹은 물품)의 명칭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5. 만약, 녹취로 출금동의를 받을 시 위의 1~4항이 정확히 녹취되어야 합니다.
자동이체동의서 제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과 이용약관(제 17조 3항)에 준하여 CMS제공사업자가 동의서수령여부를 요청할 시 최대한 협조한다.

신청인은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를(받았 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의 자동이체동의서 요건대로 징구할것을 (확 약 합 니 다 .)

귀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의 명기된[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자동이체동의서 요건],[자동이체동의서 제출],[이용거래약관에 표기된 제 17조[자동이체동의서 접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으며, 당사 서비스이용을 위해 자동이체동의서를 충실히 징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대표자명(법인명) _____ (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불 및 매입대행, 대금정산, 자동이체, 결제대금예치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 정의)]

- ① 상품: "을"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
- ② 고객: "을"의 서비스를 이용해 "갑"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회원을 포함
- ③ 결제수단: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ARS, 상품권, 교통카드, 포인트 등 "을"이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
- ④ 결제기관: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전자화폐사, 상품권발행사, 포인트운영사, 기타 결제수단의승인기관
- ⑤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에스크로"라 함):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수령 확인 시점까지 "을"이 보관하는 서비스
- ⑥ 자동이체서비스: ③항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이 약정한 일자에 상품 대금의 지급이자등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서비스
- ⑦ 자동이체회원: 전항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여 "을"에게 결제 정보를 제공한 고객
- ⑧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SMS, 이메일, 광고, 오픈마켓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무상의 서비스
- ⑨ 승인: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결제기관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 ⑩ 매입: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⑪ 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을"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 ⑫ 불량매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 1. "갑"이 "을"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 (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자, 이용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 2. "갑"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 3.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 4. "갑"이 자동이체회원의 동의없이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발생시킨 거래
 - 5. 현금영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 6. 관련법규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결절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하며, 만료 1주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의의제기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본 계약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제 4 조 (계약조건)]

- ①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 ② <거래한도> "갑"의 거래한도는 "을"에게 제출한 담보(현금/보증보험 등)의 총액을 근거로 "을"이 정한다.
- ③ <계약조건의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비스이용료, 관리비, 할부가능 개월, 담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된 조건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우선한다.
 - 1.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나 입금주기가 변경되는 경우
 - 2. "갑"의 판매형태, 판매상품, 업종 등이 현격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건전도(판매단가, 할부개월, 고객의 연체율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제 5 조 (서비스 제공 시간)]

- ① "을"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을"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6 조 (등록비/관리비의 청구 및 반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1. "갑"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3. "갑"이 "을"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 4.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이 있어 "을"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②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제 7 조 ("갑"의 의무와 책임)]

- ① <판매자 정보의 고지> "갑"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평몰 및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유선전화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② <대금청구자의 명시> "갑"은 "을"의 상호로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 ③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갑"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 "갑"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 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갑"은 3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 ⑤ <불량매출의 확인>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 매출 발생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 ⑥ <환불 및 교환>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⑦ <거래대금의 반환>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 ⑧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갑"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을"이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⑨ <변경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갑"의 사업장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⑩ <매출 신고의 의무> "을"이 "갑"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갑"의 매출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⑪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거가 지연되는경우 고객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 8 조 ("을"의 의무와 책임)]

- ① <시스템의 운영> "을"은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② <법령의 준수>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③ <거래대금의 보관> "을"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예치한 거래대금을 "갑"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④ <이용자의 확인> "을"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또는 "갑"을 대상으로 상품의 배송 여부에 대해 유선, 이메일, 기타 "을"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 9 조 (자동이체서비스)]

- ① <자동이체 사실의 고지> "갑"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회원에 대해 회원 가입 약관 과는 별도로 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② <자동이체 이용 동의> 자동이체회원은 자필 서명한 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및 공인인증서명을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자동이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자동이체일의 지정 및 변경> "갑"은 "을"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시 "갑"에게 책임이 있다.
- ④ <자동이체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후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1. "갑"이 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2. "갑"이 자동이체 이용동의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3. 자동이체회원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갑"이 거부한 경우
 - 4. 기타 "갑"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자동이체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정산)]

- ① "을"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로부터 정산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갑"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에스크로 거래의 경우 고객이 상품 수령을 확인한 것에 한해 지급한다.
- ② 정산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비영업일은 정산일 기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을"이 "갑"에게 정산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을"은 "갑"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대해 월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 ① "갑"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갑"이 "을"이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이메일/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③ "갑"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①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③ "갑"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을"이 정한 동의절차 없이 자동이체회원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 ④ "갑"이 에스크로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배송 및 상품 수령 사실 등을 "을"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 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 거래분에 대해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갑" 또는 "갑"의 대표자의 신용정보에 불량기록이 등재되거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소평몰 및 사이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⑧ "갑"의 일방적인 연락부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⑨ "갑"이 제공하는 상품이 관련법규 및 카드사 가맹점규약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⑩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⑪ 금융기관, 통신사, 정부기관 등에서 "갑"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⑫ 제11조 ①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 ⑬ "갑"이 7조 ⑩항의 매출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⑭ "갑"이 7조 ⑪항의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⑮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제 13 조 (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갑"의 동의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갑"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②항의 불량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2.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갑"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3일 이상 배송지연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우선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3. "갑"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4. "갑"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사업장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에스크로 거래에 있어 "갑"이 "을"에게 상품의 배송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하위로 알린 경우
6. "갑"이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과 관련 "을"의 자동이체등의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갑"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휴대폰, ARS 결제를 이용한 고객이 통신사로부터 청구된 요금을 미납 또는 지연 납부하거나, 대금 청구 전 취소하여 통신사로부터 "을"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9.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을"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② "을"은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 ③ "을"은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을"이 정한다.
- ④ "을"은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갑"이 제출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갑"은 "을"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제 14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취소)]

- ①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우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갑"은 고객 및 "을"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결제수단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신용카드결제는 각 카드사가 정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처리한다.
 2. 실시간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거래건의 취소는 "갑"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거래발생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는다.
 3. 휴대폰결제의 취소는 해당월 경과시 "갑"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결제완료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기타 결제수단의 거래취소는 "을"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기관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 ③ "을"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②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을"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 ① "을"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의 배달확인 의무 미이행, 구매자 정보의 부실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지불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③ "갑"은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책임을 진다.
- ④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자동이체회원의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⑤ 공인인증이 의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갑"이 고의적인 시스템 조작 및 거래금액 조정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 ⑥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6 조 (소유권 및 계약의 양도)]

"을"이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7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제 18 조]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해 계약자 정보 기입 후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상호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을)상호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주 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IT캐슬 2동 714호
 대 표 자 : 최 병 인 (인)